

의지·보조기 기사 자격증 [] 발급
재발급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발급 14일, 재발급 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	(한글) (한자)	사진 3.5cm×4.5cm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(전화번호:)	

※ 해당사항만 기재합니다.

발급	응시번호	※ 합격증번호	합격연도	
	출신학교		졸업일자	
재발급	자격증번호		발급연월일	
	신청사유		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지·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(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■ 발급 1.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(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및 의지·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) 2.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.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(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)(3.5cm×4.5cm) 2장 ■ 재발급 1. 의지·보조기 기사 자격증(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) 1부 2.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.5cm×4.5cm) 2장 3.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	
		발급	재발급
		없음	수입인지 2,000원

※ 표는 본인이 적지 아니합니다.

----- 절 ----- 취 ----- 선 -----

자격증 [] 발급 []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			
접수번호		자격증별	
성명		생년월일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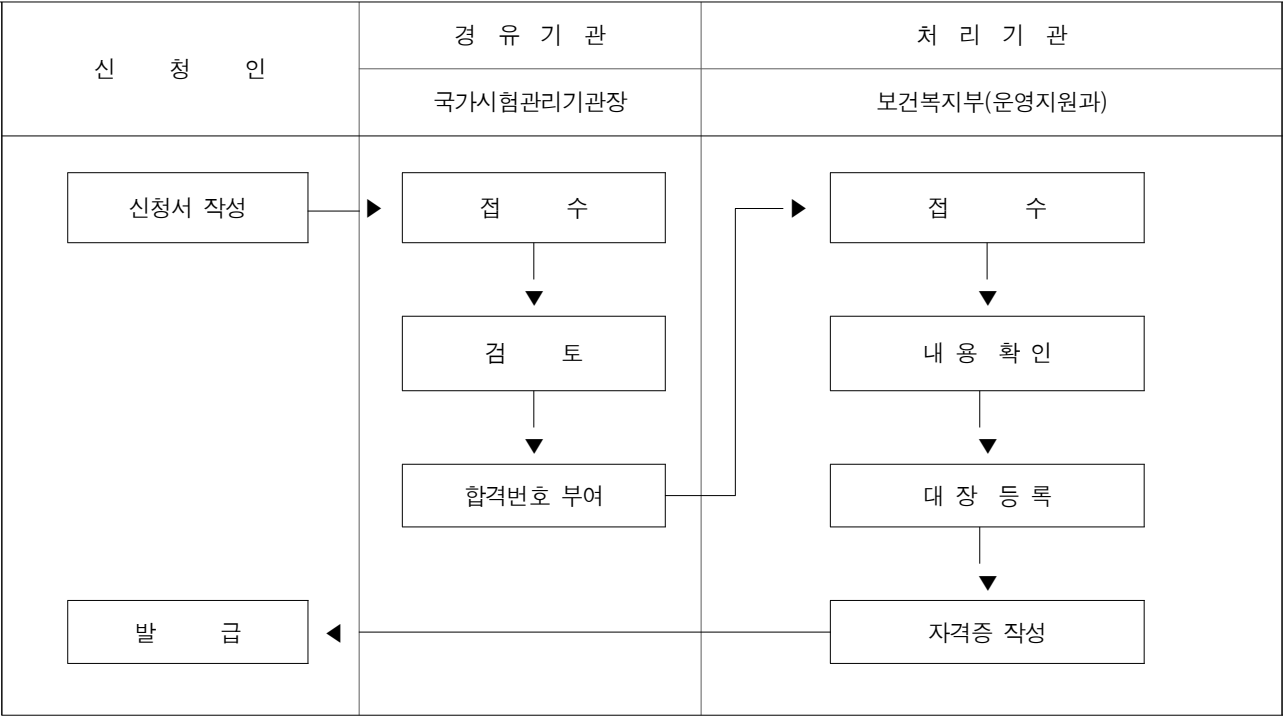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처리절차[발급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처리절차[재발급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